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중능분화재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4. 1. 16. (화요일), 14:00 ~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목 차

【심의사항】

- 1 사적 덕수궁 등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 2 사적 덕수궁 주변 성공회 회관 증축
- 3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 4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 5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옹벽 설치(허가변경)
- 6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검토사항】

- 1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보고사항】

- 1 경복궁 수문장 대기소 개축
- 2 창덕궁 내전 권역 관람환경 개선사업 보고
- 3 창덕궁 인정전 권역 조경정비 사업
- 4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조기개방 조정 시범운영
- 5 (사적) 구리 동구릉 등 18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6 2024년도 궁·능·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 정비계획 보고
- 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심 의 사 항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4-01-01

1. 사적 덕수궁 등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서울 송례문」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송례문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9월, 제9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사유 : 신청한 노선 선형의 불가피성, 대안 노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고 소음, 진동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보완)
 - '23년 11월, 제11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사유 : 소음·진동에 관한 전문가 기술 검토 의견 등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의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송례문(국보), 덕수궁(사적)
 - 소재지 : (덕수궁)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송례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40(남대문로4가)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성동구 상왕십리동 일원
(덕수궁 문화재구역에서 62m/송례문 문화재구역에서 88.2m 이격)
 - 덕수궁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및 3구역(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송례문 허용기준 1구역(원지형보존) 및 3구역(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총연장 : 제2공구 5.76km (GTX-B노선 용산~상봉간 19.9km)
 - 사업기간 : 2023.01.16.~2024.03.15.
 - 구조물 : 터널 5.56km / 서울역(정거장) 0.20km / 환기구 2개소
 - 부설심도 : 지하 50m~90m

(4) 신청인 의견

- 본 사업과 유사하게 서울특별시 내 문화재를 다수 통과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이 2019년경 서울특별시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허가를 득한 사례를 고려하였음
- 지하 50m 이상의 노선 건설로, 지상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공사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조물 안정성, 발파진동 검토 등을 시행하였고, 대심도개발, 발파진동저감공법, 지하수위 계측, 문화재 정밀계측, 모니터링 계획 등을 실시하겠음

2. 사적 덕수궁 주변 성공회 회관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 주변 성공회 회관 증축을 위하여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덕수궁 주변 성공회 회관 증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 문화재보호구역 및, 1구역(개별심의)

※ 시도유형문화재 성공회 서울성당 1-1구역(국가지정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적용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1,464.57m²(증4.0m²)

- 연면적 : 5,815.82m²(증1,081.42m²)

- 최고높이 : 23.9m(증6.6m)

- 건폐율 : 49.95%(증0.15%)

- 용적률 : 167.84%(증37.03%)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 6층

(4) 신청인 의견

- 성공회 회관은 1975년 설계대로 공사되지 않은 미완의 건축으로써 덕수궁과 성공회 대성당과의 조화를 우선했던 근대 건축가의 의지를 살려 원래의 설계대로 외관변경과 증축을 하고자 함

3.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12월, 제12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사유: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94, 788번지
(문화재구역에서 18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753㎡
 - 건축(연)면적 : 155.07㎡(155.07㎡)
 - 최고높이 : 4.3m
 - 건폐율 : 20.59%
 - 건축규모 : 지상 1층
 - 도로면적 : 530㎡
- (4) 신청인 의견 : 없음

4.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12월, 제12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사유: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93번지
(문화재구역에서 38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726㎡
 - 건축(연)면적 : 158.91㎡(158.91㎡)
 - 최고높이 : 4.3m
 - 건폐율 : 21.89%
 - 건축규모 : 지상 1층
- (4) 신청인 의견 : 없음

5.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옹벽 설치(허가변경)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옹벽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6인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92-429번지 외 8필지
(문화재구역에서 363m 이격)
 - 허용기준 7구역(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옹벽 설치 및 부지조성
 - 보강토옹벽 설치 : H=0.0~4.5m, L=341m
 - L형 옹벽 설치 : H=0.0~4m, L=220m
 - 콘크리트 포장 : 987m²
- (4) 신청인 의견 : 없음

6.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1인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92-437번지 외 5필지
(문화재구역에서 370m 이격)
 - 허용기준 7구역(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부지조성
 - 대지면적 : 3,311m²
 - 절토량 : 86.59m³, 성토량 : 50.55m³
 - 콘크리트 포장 : 2,219m²
 - 잔디식재 : 376m²
- (4) 신청인 의견 : 없음

검 토 사 항

【 검토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4-01-07

1.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세계유산-공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안건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 및 타 분과 심의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 적 :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 및 중요 안건에 대한 본위원회 심층 논의 시간 확보
- 심의사항
 - 조선왕릉(서울 태릉,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 방안 검토
- 개최시기 : 안건에 따라 일정 조정
- 구 성 : 6명 이내
- 시 행 일 : 소위원회 구성·운영 확정 후

보고사항

【 보고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4-01-08

1. 경복궁 수문장 대기소 개축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경복궁 내 수문장 출연자 대기소 환경개선을 위한 「수문장 대기소 개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나. 보고사유

-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출연자 대기소인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개축하여, 수문장 출연자 대기 공간의 환경개선 및 궁궐 활용사업 운영의 확장성을 제고하고자 함
 - '22년 11월, 제11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사유 : 소위원회 검토를 받도록 함)
 - '23년 1월, 제1차 공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보류(사유 : 계획부지 변경, 디자인 퀄리티 제고, 환기·채광 등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설계도면으로 제시할 것)
 - '23년 4월, 제3차 공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보류(사유 : 평면의 매스를 심플하게 하고 북쪽, 동쪽, 외부 노출면의 차폐를 위한 판장벽 설치, 수목 식재 및 마감재료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면을 수정, 보완할 것)
 - '23년 9월, 제4차 공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조건부가결(조건 : 계획 1안을 토대로 외부 배수 문제 처리, 경관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조경 식재 등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 추진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외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 사업내용

- 기존 수문장 대기소 철거 후 개축
- 임시 수문장 대기소 설치(콘테이너 1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 619.21㎡ - 개축 건축물 내용 		
구분	계획	실별 용도
연 면 적	618.97㎡	식당, 휴게실(남·여), 수문장 대기실, 분장실, 의상실, 수선실, 화장실(남·여), 탈의실(남·여), 샤워실(남·여), 재단 사무실 소품실, 의장물보관소-1 -2, 북 보관소
건 축 면 적	618.97㎡	
구 조/층 수	경량철골조 / 1층 3동	
임시사용가설물 설치	콘테이너 / 1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4) 신청인의견

- 연간 550만 이상이 방문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의 대기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출연자들의 불편 해소 및 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2. 창덕궁 내전 권역 관람환경 개선사업 보고

가. 보고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창덕궁」 내 기관실 권역 구조보강 공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사유

- 창덕궁 내전 권역의 보수·정비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자 함
- 유해 폐기물 반출 및 노후화로 인해 구조 보강이 필요한 지하구조물(기관실, 탄창고)을 보강 및 정비하여 문화재의 구조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23. 3월, 제3차 궁능문화재분과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으로 지붕철거 등 계획 변경하여 재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창덕궁 내 기관실 권역)
 - 사업내용: 창덕궁 내전 권역 기관실 구조보강 공사
 - 기관실 지하 외벽 등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설 보강재 설치
 - 지붕철거 후 동일규격으로 재설치(당초: 존치)
 - 탄창고 내부 및 기관실 권역 내·외부 잔존 폐기물 처리 등
- (4) 신청인 의견
 - 기관실 권역 구조안전진단 결과 벽체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기능저하에 의한 훼손이 진행되어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설보강재 설치 공사 진행 중
 - '23. 6월 착공하여 강관비계 가설하였으나, 지붕에서 대부분의 콘크리트 피복이 탈락되고 모든 부재의 구조적 기능의 완전한 상실이 확인되어 지붕 존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철거 후 동일 규모로 재시공하고자 함

3. 창덕궁 인정전 권역 조경정비 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창덕궁 내 인정전 권역의 조경정비 사업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동궐도에서 나타나는 「인정전 후면 송림」은 현대기를 거치면서 낙엽활엽수림으로 자연 천이 되는 경관적 변화를 겪게 되어 인정전 권역 조경정비 사업을 통해 전통경관을 회복하고자 함

* 관련자료: 「동궐(창덕궁)의 전통경관 고증 및 조경 복원정비 종합계획 연구」(2020.12.)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와룡동)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인정전 배후림 일원(문화재구역)
 - 정비방향 : 인정전 배후림을 소나무 경관으로 복원하기 위해 단계별(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경관 정비
 - 사업내용 : 인정전 권역 조경정비 및 시설물 정비 등
 - 인정전 배후림(5,850㎡) 소나무 경관으로 복원
 - 현재, 배후림 내 우점해 있는 낙엽활엽수를 제거 후 소나무 식재
 - 인정전 담장변 배수시설 정비 65m
 - 건물 후면 담장 고증을 위한 시굴조사 985㎡
 - 정비기간 : '24.~'26년(3개년)
 - (1차년도) 1단계 구간(3,422㎡) 조경 정비, 담장 시굴조사, 배수로 정비
 - (2차년도) 2단계 구간(1,274㎡) 조경 정비
 - (3차년도) 3단계 구간(1,154㎡) 조경 정비

(4) 신청인 의견

- 인정전 배후림은 낙엽활엽수림으로 형성되어 원형 경관에 맞지 않고 대경목이 건물 가까이 자라고 있어 전각과 주변시설물 보존관리를 위한 정비가 필요
- 인정전 담장 후면 배수로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23년 집중호우 시 담장 일부가 붕괴되는 등의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4.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조기개방 조정 시범운영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조기개방 조정(단축) 시범운영 사업 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조선왕릉의 체계적 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기 개방 시간 조정
 - 새벽시간대 자연재해 발생 등 안전관리 한계
 - * 야행성 멧돼지(10~1월간 서오릉, 정릉 등 4개능 총 13일 폐쇄) 유기견(수시) 출몰, 불법 임산물 채취, 맨발보행, 빙판 낙상 등 조기시간대 사적지 관람환경의 악화
 - * 겨울철 일출시간(7:30분대) 전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불(화재), 자연재해, 미세먼지 등 관람객 안전사고 및 산업·재난재해 위험이 증가

다. 주요내용

- (1) 시행기관 : ○○○
- (2) 대상문화재 : 고양 서오릉(사적), 김포 장릉(사적)
 - ※ 조기개방 확대 연혁
 - 2005.5.1.부터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구리 동구릉 조기개방 확대 시행

(3) 시행내용

- 위치
 - 고양 서오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32(용두동)
 - 김포 장릉: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면)
- 조정내용 * (현행) 2~10월 6~9시, 11~1월 6:30~9시 → (개선) 매월 7~9시

1단계('23.12~'24.1.)	⇒	2단계('24.2.1~)	⇒	3단계('24.11.1~)
행정절차 추진 (설문조사, 문화재위원회 보고, 예고 등)		산불기간 개방시간 서부관리소 시범조정 (06:00~07:00 / 1시간)		전 지구관리소 실시 (개방시간 07시로 통일)

* 산불예방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은 현업공무원 저녁 8시까지 근무 예정

(4) 신청인 의견

- 조선왕릉은 자연친화적 경관(조명 금지)을 유지해야 하는 문화유산이나, 일출 전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람 지장 및 관람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 태풍 카눈 여파로 관람로에 수목이 도복되며 김포 장릉 조기관람이 중지된 이력 존재(23.8.13)
- 도심 속 생태 보고인 왕릉의 휴식기 부족*으로 피해 복구, 역사 경관림 복원 등 **온전한 원형 보전이 저해되어 자연성 회복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
 - * 2~10월의 경우 24시간(1일) 중 1/2 이상(12시간) 개방하고 있는 실정
 - ** ('22~현재) 특히 고양 서오릉의 경우 범정보호종(맹꽁이 1000여 개체) 군집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어 거국적인 문화유산 보호 의지의 실현과 관심 증대가 요구되는 바임
-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관 차원의 사전 예고, 대대적인 홍보활동(현장 배너, 홈페이지, SNS 홍보)을 병행한다면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조정 시범운영 관련 국민 설문(12월, 소통24, 91% 동의), 현장 관람객 동의 서명(12월, 98%) 완료
- 따라서 **세계유산 보호와 문화유산 품격 유지**를 위하여 '조기개방 조정 시범운영'에 대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사적) 구리 동구릉 등 18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보고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구리 동구릉」 등 18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은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3년 일부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부합되도록 허용기준 구역 표기 방식을 수정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구리 동구릉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인창동)
 - (사적) 여주 영릉과 영릉 : 경기도 여주시 영릉로 269-10 (능서면)
 - (사적) 남양주 광릉 :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수목원로 354(진접읍, 광릉)
 - (사적) 남양주 사릉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사릉로 180 (사능리)
 - (사적) 남양주 홍릉과 유릉 :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금곡동)
 - (사적) 남양주 순강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외(내각리)
 - (사적) 남양주 영빈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 (사적) 고양 서오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2번지
 - (사적) 고양 서삼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원당동)
 - (사적) 광명 영회원 :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산141-20번지
 - (사적) 파주 소령원 : 경기도 파주시 소령원길 41-65 (광탄면)
 - (사적) 양주 온릉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 (안녕동)
 - (사적) 서울 연산군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7길 46(방학동)
 - (사적) 서울 정릉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16(정릉동)
 - (사적) 서울 의릉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20(석관동)
 - (사적) 서울 영회원과 송인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 (사적) 서울 선릉과 정릉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삼성동)

(3) 보고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구역 표기방식 수정
- 구리 동구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최고높이 29m 이하			2-4구역	○ 최고높이 29m 이하
6구역	○ 최고높이 45m 이하			2-5구역	○ 최고높이 45m 이하
7구역	○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54m초과 시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은 별도 검토		3구역	○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54m초과 시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은 별도 검토	

○ 여주 영릉과 영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남양주 광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남양주시,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남양주시,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남양주 사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 검토)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 검토)	

○ 남양주 흥릉과 유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신축불가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23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23m 이하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 검토)	
5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 검토)				

○ 남양주 순강원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남양주 영빈묘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양 서오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양 서삼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경기도 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문화재자료 제7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 경기도 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문화재자료 제7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 광명 영희원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파주 소령원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양주 온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화성 용릉과 건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1-2구역	○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 시 개별검토	
3구역	-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12m 이하 (경사지붕만 허용)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 시 개별검토			2-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7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보물 제1942호 용주사 대웅보전)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 천보루)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4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보물 제1942호 용주사 대웅보전)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 천보루)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 서울 연산군묘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보존구역)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개별검토					

○ 서울 정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보존구역)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서울 의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서울 영취원과 승인원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 서울 선릉과 정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 신청인 의견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으로 허용기준 구역을 위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2024년도 궁·능·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 정비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2024년도 궁·능·원 내 고건물 및 시설물 복원·보수 정비사업과 조경 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4대궁·종묘·세종유적·조선왕릉 관리소의 고건물 및 시설물 보수·복원 정비사업, 조선왕릉 능제복원사업, 수목병충해 방제 등 조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 자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사업내용

- 신청인 : ○○○
- 대상문화재 : 4대궁, 종묘, 세종유적, 조선왕릉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사업내용 : 세부 추진계획 [붙임 1~3] 참조 <총 370건, 57,541,785천원>
 - 궁·능 복원 및 보수정비사업 : 253건, 57,541,785천원
 - 직영보수단 사업 : 86건
 - 직영조경단 사업 : 31건

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50 (1구역/문화재구역과 45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41㎡ - 건축면적 : 127.85㎡ - 건축규모 : 지상 1층 - 최고높이 : 4.3m - 부지조성 : 경화마사토, 잔디, 현무암 판석 포장 ※ 2022.4.21.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 되어 재신청된 사항임	허가	'24.1.8.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49 (1구역/문화재구역과 67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신청면적 : 1,335㎡ - 건축면적 : 227.56㎡ - 건축규모 : 지상 1층 - 최고높이 : 4.3m - 콘크리트 포장(t=20cn) : 297㎡ - 석축 설치(H:0.2~3m) : 137m ※ 2022.7.21.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 되어 재신청된 사항임	허가	'24.1.8.
(사적) 김포 장릉	경기도 김포시	○○○	비공개(군사시설관련)	허가	'24.1.8.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p><옹벽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산4-64 (7구역/문화재구역과 363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단지 부지조성(옹벽 설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989㎡ - 옹벽계획 : L형+보강토 옹벽(총500.43m, 최고높이 4.3m) <p>※ 2021.9.16.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p>	허가	'24.1.15.